

[무배당 늘함께 실버암보험1506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 - 장기질병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늘함께 실버암보험1506

나. 회사는 만기 재가입시 보험종목의 명칭에 재가입형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다르게 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연령

가. 최초가입

| 구 분 |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가입연령 |
|----------|-------------|------|-------------|-------------|---------|
| 보통 약관 | 암 진단비 | 10년 | 전기납 | 월납 연납 | 61세~80세 |
| 특별 약관 | 암사망 | 10년 | | | 61세~70세 |
|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년 | | | 61세~80세 |

나. 만기재가입

| 구 분 |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가입연령 |
|----------|-------|-------------|-------------|-------------|-------------|
| 보통 약관 | 암 진단비 | 10년 | 전기납 | 월납 연납 | 71세~90세 |
| | | 1년~9년 | | | (100-보험기간)세 |
| 특별 약관 | 암사망 | 1년~9년 | | | (80-보험기간)세 |
| |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 | 10년 |
| | | 1년~9년 | (100-보험기간)세 | |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2) 만기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전 소멸된 보장은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며, 잔여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 만큼 보험기간 적용하여 드립니다.

다. 최고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여 운영하며, 가입연령, 건강상태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달라질수 있습니다.

| 구분 | | 최고 보험가입금액 |
|-------|--------------|-----------|
| 보통약관 | 암진단비 | 2,000만원 |
| 특별 약관 | 암사망 | 2,000만원 |
| | 5대고액치료비암 진단비 | 2,000만원 |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 가. 우량채 할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 (직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제출하여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회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 (1) 고혈압이 없을 것
 -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2) 당뇨병이 없을 것
 - 당뇨병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
8. 갱신탁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표준 이율로 할인하며, 표준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

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17. 만기재가입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나. 회사는 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며, 계약자가 재가입 시점에서 아래 재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1) 피보험자 연령이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었을 것
- 3) 재가입 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다. 계약자는 나.항의 재가입 직전계약 외 이 상품에 추가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이 상품에 추가된 담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제외한 재가입 안내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나.항의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한 경우 아래에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 1) 재가입되는 계약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및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재가입일 현재의 제도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 2) 재가입전 계약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담보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3) 위 1)의 위험률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만기재가입계약의 보험료 적용
 - I. 위험률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만기재가입 계약의 최대 보험료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보험상품심사기준에서 정한 위험률 조정폭(매 3년 단위로 위험률 조정시 25%)을 인상한도로 하여, 3년마다 25%(복리기준)단위로 하여 산출함.
 - II. I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보험상품심사기준에서 정한 위험률 조정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정폭을 따름.
 - III. I 및 II 의 만기재가입 보험료 변동요인 중 나이증가 및 보장내용(면책/감액) 등을 제외한 모든 인상요인을 위험률 변경에 따른 인상요인으로 정의함.

18. 기타

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함

- 1)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 2)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 나. 「무배당 늘함께 실버암보험1506」는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청약서 사용)
- 간편심사 :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연령자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 다. 피보험자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의적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한 일반 암보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 상품과 일반 암보험의 보험료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함
- 라.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간편심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별첨)에 의한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마.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바.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사. 판매채널 :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

(붙임)

간편심사 및 보험료 납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간편심사 관련]

1. 간편심사 :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2.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 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당뇨병”, “고혈압” 이 존재하는 피보험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보험료 납입 관련]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를 제출하여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까지 이 계약의 영업보험료 5%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합니다.
 - (1)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 없을 것
 - (2)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이 없을 것

[서류 작성형]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넓고 크게 밀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보험설계사 _____(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자 _____(인/서명)

[전화 녹취형]

위 내용에 대하여 상담원 _____은(는)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 _____은(는)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